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27-01

NATIONAL TAX SERVICE
www.nts.go.kr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머리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주신 기업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 육성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 하기 위하여 혁신성장기업에게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세금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기업의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 구조조정 단계까지 기업인과 실무자 들이 알아야 할 각종 감면제도, 세정지원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세정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www.nts.go.kr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차례

Ⅰ. 혁신성장 세정지원 개요

1. 혁신성장 기업 3
2. 혁신성장 세정지원 4

Ⅱ. 혁신성장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Part 1. 신규 사업자

1. 기초 세금상식 11
2. 사업자등록 안내 19
3. 확정일자 신청 안내 22
4. 가산세 24

Part 2. 유용한 제도 안내

1. 모범납세자우대제도 31
2. 세금포인트 제도 33
3.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제도 35
4. 세법해석사전답변 제도 37
5. 성실납세협약 제도 39
6. 국선대리인 제도 41
7. 영세납세자지원단 43
8. 납세자보호담당관 45
9.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47
10.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 49
11.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절차 51
12. 국세상담센터 53

국세청 www.nts.go.kr

Ⅲ.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Part 1. 창업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9
2. 취득세 경감 63
3. 재산세 면제 65
4. 등록면허세 면제 67

Part 2. 투자, 자금조달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71
2.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73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75
4.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77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79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81
7.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83
8.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85

Part 3. 사업진행

1.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89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91
3.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세무서 및 전담창구 운영 92
4.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94
5. 경정청구서 조기처리 96
6. 인터넷 상담 등 세무상담 지원 98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0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6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차례

9.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110
10.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환급신청 112
11. 고용증대 세액공제 113
1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15
1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117
1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소득공제 119
15.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1
1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23
17.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5
18.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27

Part 4. 합병 등 구조조정

1.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131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33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135

Ⅳ. 혁신성장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1. 세무조사 선정 139
2.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141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143
4.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144
5. 신고내용 확인 145
6.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147
7.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148

8. 해외부동산·주식과 세금 150
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52
10.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54
11. 주식양도와 세금 156
1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158
1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160
14. 홈택스 이용 방법 162
15. 사업용계좌 제도 164

부록 : 혁신성장 관련 지원정책 현황 167

국세청
www.nts.go.kr/c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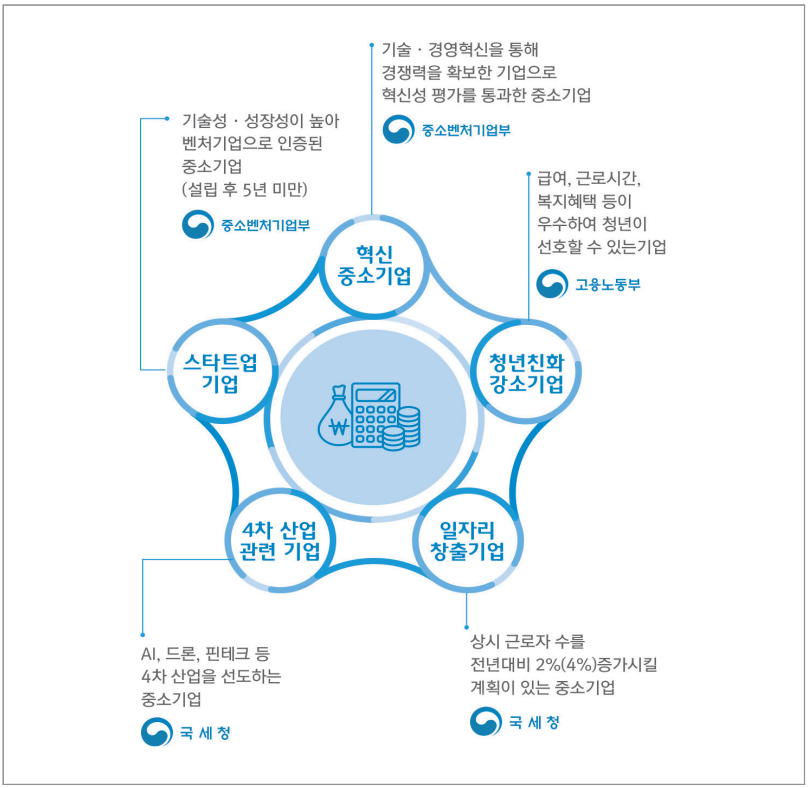
Ⅰ 혁신성장 세정지원 개요

1 혁신성장 기업

혁신성장 기업이 무엇인가요?

-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2 혁신성장 세정지원

혁신성장 기업에게는 어떤 세정상 혜택이 있나요?

-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2%, 3백억원~1천억원 : 4%
  -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설립 후 5년 간 제외
  - (혁신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혁신성 평가를 통과·인증된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중소기업*
    * 요건 충족 시 3년 간 제외(매년 요건 충족)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합니다.
- 신속한 경정청구
  - 경정청구서 접수 즉시 청구세액의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신속하게 환급해드립니다.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 기업이 세무컨설팅 등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혁신성장기업 전담창구(전국 세무서 운영)
  - 혁신성장기업이 세제·세정상 지원책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법인납세과의 혁신성장 전담창구를 방문하시면 관련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혁신성장기업이 각종 민원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처리하여 혁신성장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 거점세무서 운영
  - IT·벤처기업 등 혁신성장 관련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특성화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건의사항 수집 등을 통해 적시에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거점세무서 현황 |

구 분	거점세무서	문의처	구 분	거점세무서	문의처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금 천	02-850-4422	스마트공장	안 산	031-412-3402
	화 성	031-8019-1405	미래자동차	반 포	02-590-4406
	북부산	051-310-6407	드 론	서 초	02-3011-6403
	북대전	042-603-8402	핀 테 크	분 당	031-219-9423
	구 미	054-468-4402			
	서광주	062-380-5403			

- 혁신성장기업 현장 세법교실 운영
  -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 요청 시 사업자 및 협회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출장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인터넷 상담 우선처리
  - 혁신성장 지원대상자의 상담 요청내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국세청
www.nts.go.kr/cont

Ⅱ

혁신성장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PART 1. 신규사업자

PART 2. 유용한 제도 안내

Part 1

신규 사업자

1. 기초 세금상식
2. 사업자등록 안내
3. 확정일자 신청 안내
4. 가산세



1 기초 세금상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어떤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나요?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함에 따라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연도 중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소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1~5.31이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1~6.30입니다(신고기한 말일이 공휴일 이면 그 다음날 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업 종	기준수입금액 (당해연도)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사업소득에 대해 기장의무가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복식장부)를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에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과 비용, 고정자산 증감을 기재(가계부와 비슷)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기준수입금액(직전연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0.75억원 미만	0.75억원 이상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②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판매용재화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인건비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업종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

업 종	기준수입금액(직전연도)	
	단순경비율 대상	기준경비율 대상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3.6천만원 미만	3.6천만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천만원 미만	2.4천만원 이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개인사업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 · 납부하나요?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 납부기간
법인일반 과세자	제1기 예정 1.1.~3.31.	1.1.~3.31. 까지 사업실적	4.1.~4.25.
	제1기 확정 4.1.~6.30.	4.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예정 7.1.~9.30.	7.1.~9.30. 까지 사업실적	10.1.~10.25.
	제2기 확정 10.1.~12.31.	10.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개인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 기한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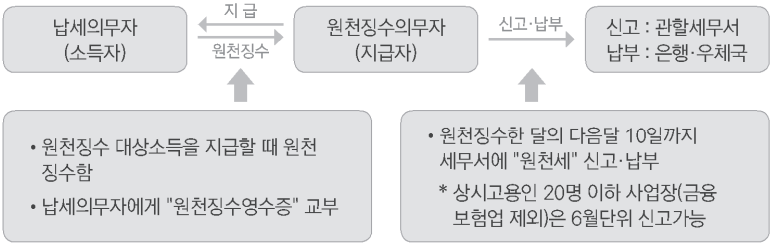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원천징수하는 세금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별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은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2 사업자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장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경영자)
-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1부

  ※ 기본 구비서류 외 자세한 구비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입력·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도 되나요?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도 함께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면 처벌이 있나요?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가 가능한지?
-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조회」

3 확정일자 신청 안내

상가건물 임차계약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인 공증(公證)의 일종이고, 원칙적으로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법 제3조의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법 제4조의 확정일자 부여를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는 자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개인, 법인)
  - 임대차계약서 표시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어느 세무서에 신청하나요?

-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종된 사업장에서도 확정일자 부여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구 분	환산보증금액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5억원
광역시(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자치특별시, 파주시, 화성시	3억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 환산보증금액 = 보증금 + 월차임환산액(월차임 × 100)

신청서의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등록신청 전 확정일자만 신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확정일자 신청여부 란에 체크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후 계약내용 변경 없이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 인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도면(서식의 뒷면 사업장도면 양식 또는 별지)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도면(서식의 뒷면 사업장도면 양식 또는 별지) • 위임장(도장날인 또는 서명) * 법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날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4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수입금액×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10%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①+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3/10,000

② 초과환급받은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3/10,000

원천징수 납부등 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3%+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3/10,000

② 미납세액· 과소납부세액×10%

가산세 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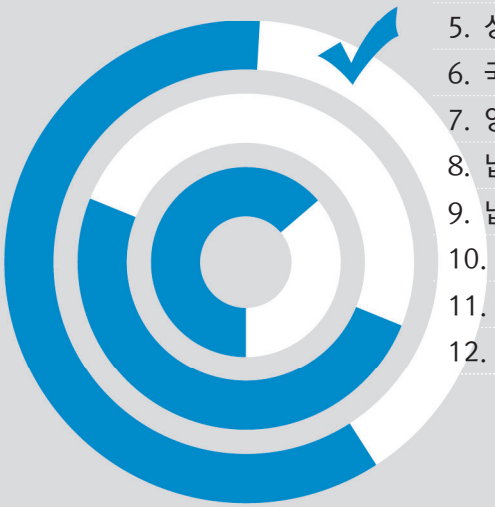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내용		가산세	감면율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정당한 사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	100%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50%
제출 의무 이행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50%

Part 2

유용한 제도 안내

1. 모범납세자우대제도
2. 세금포인트 제도
3.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제도
4. 세법해석사전답변 제도
5. 성실납세협약 제도
6. 국선대리인 제도
7. 영세납세자지원단
8. 납세자보호담당관
9.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10.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
11.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절차
12. 국세상담센터



1 모범납세자우대제도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 상 우대혜택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납세담보제공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5억원 한도)해 드립니다.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

- 최근 3년 이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최대 2일간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 한함)

공항 출입국 우대

- 법무부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1년간).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료 10%할인, 보증한도 10~30억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 10%할인, 보증한도 최대 50억까지 증액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 우리, 중소기업, 농협, 부산, 경남, 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등을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수상일로부터 1~3년간).

대명콘도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근로자 포함)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전용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의료비 할인혜택(소속 근로자 포함)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60개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2 세금포인트 제도

적립된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는 누구에게 하나요?

-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조특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에게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 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고,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부여(법인 제외)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가 개인납세자는 1점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납세자의 경우 체납사실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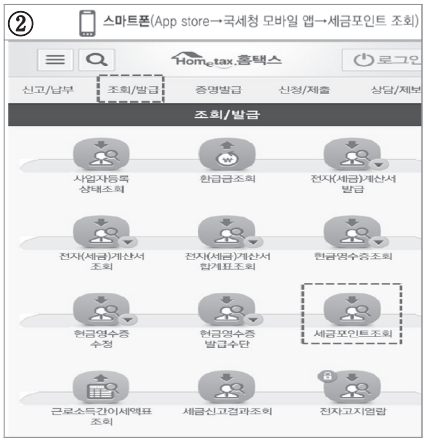
세금포인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2)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3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제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이미 고지를 받아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납기연장 징수유예 최장 9개월, 체납처분유예 최장 1년간 유예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장 2년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금 액	유 형	
5천만원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	① 생산적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⑦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⑨ 혁신중소기업	②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⑥ 재기 중소기업인 ⑧ 스타트업 기업
2억원	⑩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⑪ 종합인증우수업체(관세청)
5억원	⑫ 모범납세자[1]	⑬ 세금포인트[2]

1) 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간, 지방청장 이하 표창 : 2년간

2) Min(사용가능포인트×100,000원, 5억원)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 유예

성실납세 기준에 해당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 정상운영 및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장 2년

4 세법해석사전답변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어떤 제도인가요?

-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신청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 특정한 거래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임

-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그 세무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제외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자신의 사업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 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장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하거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예: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신청서식 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성실납세협약 제도

성실납세자와 국세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합니다.

성실납세협약 제도란 무엇인가요?

-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해결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법인이 협약대상이 되는가요?

-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 중 적절한 내부세무통제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 협약대상이며,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협약대상으로 합니다.

> **내부세무통제시스템(Tax Control Framework)이란?**
>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를 말합니다.

성실납세협약 체결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성실납세협약체결 법인은

-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되며
- 모범납세자 표창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 성실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 세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 법인의 세무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처리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 성실한 법인에게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주어 법인의 납세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6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요

국선대리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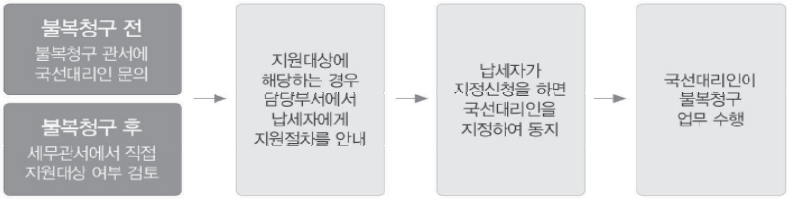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어떤 사람이 국선대리인인가요?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불복청구서 작성,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 불복업무 전반을 무료로 대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선대리인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 → ③번으로)

7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무엇인가요?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사업성장·폐업단계에 따라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현장상담실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서비스 내용
무 료 세무자문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 업 자 멘 토 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창업일부터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 업 자 멘 토 링	•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멘토 지정일부터 폐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 비 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필요 없이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126 → ③번)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

8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 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③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국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집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조정해 드립니다.

9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무엇인가요?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참조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권리구제
세무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조사 기간연장 또는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국세행정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공통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조사반(담당자) 교체징계요구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조사**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10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

1년에 2회 신고·납부(7월10일, 1월10일)로 원천세 신고절차 마무리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는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 사업자 등은 제외)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 평균인원수
    (단,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신청기간	승인통지 기한	적 용
6.1. ~ 6.30	7.31.까지	하반기(7월~12월분)부터 적용
12.1 ~ 12.31	다음해 1.31.까지	다음해 상반기(1월~ 6월분)부터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면으로 작성한 후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면신청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 기입 및 작성 →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

홈택스 [신청/제출]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11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절차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리구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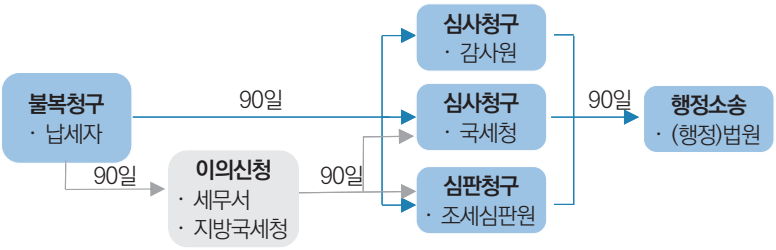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불복절차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126 → ③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12 국세상담센터

국세 관련 궁금증은 126으로 전화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해결하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납세자 여러분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한 국세청의 전문 상담서비스 기관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세무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국세조사관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세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세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비밀번호등록, 세법상담, 탈세 등 각종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한 땐 국번없이 126번								
1(홈택스 상담)						2	3	4
1	2	3	4	5	9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비밀번호등록	세법상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탈세 등 각종제보

-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126번 통화는 시내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로 접속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고객의 소리 (VOC)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 국세청은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VOC 시스템 이용방법
  -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불만, 건의, 칭찬 등을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VOC 처리결과 회신
  - 접수 및 처리상황을 휴대폰 SMS와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처리결과 회신드립니다.

국세청
www.nts.go.kr/cop

혁신성장을 위한

Ⅲ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PART 1. 창업
PART 2. 투자, 자금조달
PART 3. 사업진행
PART 4. 합병 등 구조조정

Part 1
창업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취득세 경감
3. 재산세 면제
4. 등록면허세 면제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2021.12.31.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2021.12.31.까지)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2021.12.31.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12.31.까지 법령에 따른 일정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내용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일정한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 최초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합니다.
  -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여부, 소규모 수입금액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31개 업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5년 100%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

- 이 경우에도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율을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로 적용합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신성장서비스업) S/W개발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제4항 제5호에 열거된 업종
- 감면기간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감면율 100% 적용 사업자 제외).
  * (최소 고용인원)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감면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은?

-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전환, 사업양수 등으로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창업일 등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창업일 등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대상 과세연도를 기산합니다.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감면대상 사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업」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레트임대업을 말함)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1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9.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1. 이용 및 미용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17.6.20. 개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2 취득세 경감

경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20.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중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2020.12.31.까지) 받은 기업 중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가 경감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학원업·관광숙박업 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제외),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경감내용

-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감면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입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다음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3 재산세 면제

면제·경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20.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중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2020.12.31.까지) 받은 기업 중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재산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학원업·관광숙박업 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제외),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면제 · 경감내용

-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 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세액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또는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감면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창업일"이란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4 등록면허세 면제

면제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20.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중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2020.12.31.까지) 받은 기업 중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학원업·관광숙박업 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제외),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면제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감면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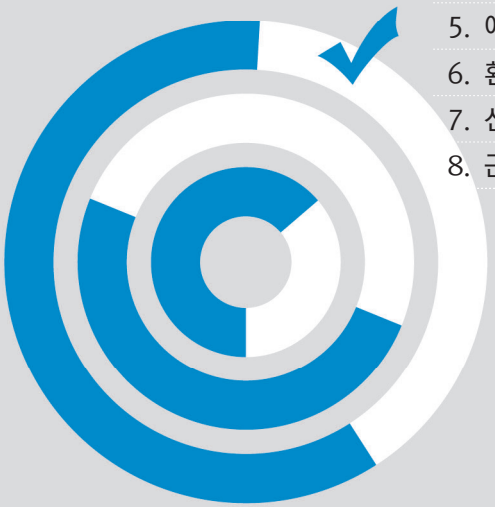
-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입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Part 2

투자, 자금조달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2.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4.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7.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8.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요건**
>
>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중견기업 요건**
>
> 중견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 (규모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 (유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제내용

- 2018.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 일정한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중견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를 공제합니다.
- 2015.1.1.~2015.12.31.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에 한함)의 경우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3년 간 투자하는 경우 4%를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요건 중 규모기준을 1,500억원 미만으로 적용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장치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은 제외)
  * 차량, 공구, 선박 및 항공기, 콘크리트조 건물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설립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경우 7년 적용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5

2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2018.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시험용 시설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중 전담부서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자(「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에 한함), 기술연구 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직업훈련용 시설 : 종업원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 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중견기업 요건

중견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규모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괄 세액공제 받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설립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 적용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1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2019.12.31.까지 생산성향상시설을 위한 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시설(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첨단기술설비(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다음의 설비를 2019.12.31.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7%를 법인세(소득세) 에서 공제합니다.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자금력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IT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ASP방식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괄 세액공제 받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4

4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2019.12.31.까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 공제율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1]과 한 소방자동차[2]로서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3의2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갖춘 자동차
    1)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대상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일정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 우수체인사업자 ·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등 참고)
  - 광산보안시설(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등 참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 시설(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7 등 참고)
- 기술유출방지시설(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 등 참고)
- 해외자원개발설비(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등 참고)
- 내진보강 설비(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7 등 참고)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괄 세액공제 받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5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2018.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등 참고)

에너지절약형시설 예시

-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등
- 전력수요관리설비 : 야간단열장치, 가스냉방시설 등
-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일정한 제품(LED조명, 고효율인증보일러 등)
-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장치시설
-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 등 참고)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괄 세액공제 받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5의2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2018.12.31.까지 환경보전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청정생산시설로서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

  *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 등 참고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괄 세액공제 받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5의3

7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2018.12.31.까지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ⅰ.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ⅱ.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일 것

  ⅲ.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 적용함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8에 따른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
  * 미래형 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등), 지능정보(인공지능,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방송통신,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섬유,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등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 방식에 따른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투자완료시 일괄세액공제 방식은 적용 불가).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5의5

8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2018.12.31.까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산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해당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 10%)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기업 종류에 관계없이 아래 공제대상 자산 중 ㉮또는 ㉯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취득하거나 ㉰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 10% 공제율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승강설비 등으로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9 참고)
㉲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공제신청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부품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취득일, 즉 당해 임대주택 등의 구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즉, 장기할부조건 취득 등의 경우에도 각 과세연도별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주택의 준공일은 당해 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며,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 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 자산의 구입일(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자산을 투자한 과세연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94

Part 3

사업진행

1.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3.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세무서 및 전담창구 운영
4.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5. 경정청구서 조기처리
6. 인터넷 상담 등 세무상담 지원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11. 고용증대 세액공제
1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1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소득공제
15.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6.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7.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조사선정제외 대상 및 요건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고용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수입금액 1천억 미만 중소기업

  *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2%, 3백억원~1천억원 : 4%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당해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우대요건

  1)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 계산시 가중치 부여(1명→2명)
  2)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1명→2명)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시 최대주주 등 해당
  3)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1명→2명)
     *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율, 신용등급 등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 (스타트업 기업) 기술성·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
  → 설립 후 5년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 (혁신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여 인증된 일정 규모 이하 성실 중소기업
  → 해당 요건 충족시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매년 요건 검증)

조사유예 대상 및 요건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정기조사 대상자 중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최소1명) 이상 증가하였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조사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주점·호텔·여관)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사유예(제외) 혜택 배제

  →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간 조사유예(지방소재 기업은 3년)

  우대요건

  1) 청년(15세이상 34세 이하인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 계산시 가중치 부여(1명→2명)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1명→2명)

- (스타트업 기업) 기술성·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증된 벤처기업으로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

  → 2019.12.31.까지 조사유예(지방소재 기업은 2020.12.31.)

- (혁신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일정 수입금액 이하 중소기업

  → 2019.12.31.까지 조사유예(지방소재 기업은 2020.12.31.)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환급신청 내용 검토 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거나,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

조기지급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모범납세자
  - 직전년도 과세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현행 조기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고 ,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지급합니다.

3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세무서 및 전담창구 운영

혁신성장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거점세무서 운영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올해 8월에 구성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 등 혁신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IT·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거점세무서를 지정·운영하여 혁신성장 관련 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법교실 등을 통해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등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거점세무서에서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여 혁신성장 기업을 위한 좀 더 나은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거점세무서 현황 |

구 분	세무서	소재지	문의처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금 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	02-850-4422
	화 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031-8019-1405
	북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	051-310-6407
	북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042-603-8402
	구 미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79	054-468-4402
	서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	062-380-5403

구 분	세무서	소재지	문의처
스마트공장	안 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	031-412-3402
미래자동차	반 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3	02-590-4406
드 론	서 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02-3011-6403
핀 테 크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번길	031-219-9423

혁신성장 기업의 각종 민원해결, 세무상담 등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 혁신성장 기업이 세제·세정상 지원책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법인납세과의 혁신성장 전담창구를 방문하시면 관련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성장 기업이 각종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처리하여 혁신성장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납세자세법교실 소개

-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 교육과정으로, 세법령 및 실무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납세자세법교실 교육과정과 일정

- 주요 세목(부가·소득·법인·양도·상속·증여) 신고실무(Ⅰ,Ⅱ) 및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가업승계지원, 창업기업과 세무, CEO를 위한 세금교실, 연말정산, 가산세 실무 등 약 20여개 과정, 80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년 초(2월)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연간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1~2개월 주기로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일정 및 신청방법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 납세자세법교실 → 공지사항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세법교실은 6시간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단, 가업승계지원 및 가산세 실무 과정은 3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교육장소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법교실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교육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파장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 납세자세법교실 → 오시는 길

지역별 세법교실 운영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납세자를 위하여 상·하반기 전국 5개 권역(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3~4개 과정 세법교실을 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납세자세법교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납세자세법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세금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납세자세법교실 → 동영상 강의자료).
  -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 그리고, 직능단체 등이 일정 규모의 인원을 모집한 후에 세법교실 출강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 문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납세자세법교실 담당(☎ 064-731-3216)

참가신청 등

-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입니다.
- 참가신청시에는 공지사항에 게시된 '납세자세법교실 연간 운영 계획' 상의 각 과정별 신청기간 및 교육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경정청구서 조기처리

경정청구 제도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기한

- (원칙)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예외)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경정청구 결정기한

-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세정지원 내용

-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경정청구 접수 즉시 청구세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6 인터넷 상담 등 세무상담 지원

인터넷상담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성장 지원대상자의 상담 요청내용은 최우선적으로 검토(우선처리 원칙) 하여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상담내역 확인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나의 상담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담 등록 시 작성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동일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초 등록 시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담내역 조회에서도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담사례 조회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을 통하여 기다리는 시간 없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자주묻는 상담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세목별 상담사례」, 「핫이슈 상담사례」로 구분하여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상담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주묻는 상담사례 : 상담유형별로 검색가능, 총 2,396건의 상담사례 등록

- 인터넷 상담사례 : 기간별 및 검색어별 상담사례 검색가능, 총 414,773건의 상담사례 등록
- 세목별 상담사례 : 세목, 조분류, 항분류 구분을 통하여 상담사례 검색가능
- 핫이슈 상담사례 : 전체 세목별로 조회 수가 많았던 100건의 상담사례

※ 상담사례 이용 시 답변일 이후의 세법개정사항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 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용

-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일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률 |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중기업 (소기업 외)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 의료업	5%

*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 이내인 기업
* 지식기반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열거된 업종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규모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것

-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일정한 중소기업은 해당 자동차 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2020.12.31.까지).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위 감면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감면세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감소한 상시근로자 수×5백만원) (산식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 1억원

감면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7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함(영 §6①)
23.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 :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정성 검토, 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보수,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같은 법 시행령 §2)을 말함
    *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은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24.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영 §5⑧)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사업장(영 §54①) [자동차부분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해당되지 않음]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 [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을 말함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원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43.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 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비용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란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관련 비용 등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대상기술(11개 분야, 157개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 중 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을 뜻합니다.
-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종류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

구분	일반R&D		신성장 R&D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
중견기업	8~15%	40%	20~30%
일반기업	0~2%	25%	

* 일반 R&D는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선택가능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 R&D는 25~40% 공제율 적용

공제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요건**
>
> 중견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 (규모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독립성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 ㉱ (유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구 분	비 용
	가)「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 제29조 및「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구 분	비 용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관련)

구 분	분 야
1.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IT융합
3. 차세대SW 및 보안	기반 SW(소프트웨어),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 다이오드), 3D프린팅
6. 차세대방송통신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 UHD(Ultra-High Definition)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장품 소재
8. 에너지신산업·환경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타이타늄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 로봇, 로봇공통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9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대상

-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내용

- (이전소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을 2018.12.31.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 소액주주의 범위 판정 시 지분 30% 기준을 적용

- "특허권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으로 "수입금액 기준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함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수입금액 기준 등"의 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 해당 기업이 특허권 등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일 것

- (대여소득)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12.31.까지 대여(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합니다.
- (취득금액)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 종류에 따라 취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 10%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5%

공제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차감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2

10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종합소득세) 환급신청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납부한 법인세(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과세기간)와 그 직전사업연도(과세기간)의 법인세(종합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이 되어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세액 계산방법

- 환급세액은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법인세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①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과다환급시 부담액

- 법인세(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법인세(종합소득세)로서 징수합니다.

1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대상

-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단,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 제외)

세액공제 내용

-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아래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증가 인원 1인당 공제금액 |

구 분	중 소 기 업	중 견 기 업	일 반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1,0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 )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 시 적용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청년 등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인 사람 중 다음의 ㉮~�--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 산 방 법
청년 등 상시근로자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 수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 수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인원이 유지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합니다(세액공제의 추가 적용).

공제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의7

1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내용

- (기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세액 =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사회보험율)×적용률(50~100%)
>
> ※ (적용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기타근로자 50%(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75%)
>
> * 신성장서비스업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제4항 제5호에 열거된 업종

- "사회보험료"란 다음 각각의 것을 말합니다.

>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료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각의 수를 더한 수를 말합니다.

>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1
• 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요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인원이 유지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합니다.

● (추가) 소규모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신규 가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중소기업이 2018.1.1.현재 고용 중인 일정한 근로자* 중 2018.12.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 이내인 근로자

공제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2017.12.19. 법률 개정 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2018.1.1.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2018.3.21. 시행규칙 개정 시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75%)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30의4

1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공제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세액공제 내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단절 여성과 2020.12.31.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5%(중견기업)·30%(중소기업)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 여기서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합니다.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공제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2017.2.7. 시행령 개정 시 재고용 시기를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완화하였고,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2017.12.19. 법률 개정 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10% → 30%로 상향조정,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15%로 정하였고, 개정 규정은 2018.1.1.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의3

1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득공제 내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법령에 따라 계산한 임금 감소액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에도 근로자에 대해 익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7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할 것

  - 소득공제 대상 "임금 감소액"은 다음의 ㉮와 ㉯의 합계액입니다.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75%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50%

  * ㉯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봄

  -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당 임금"이란 임금총액 합계를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근로시간 합계"란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

-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공제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2014.1.1. 법률 개정 시 해당 세제혜택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30의3

15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 내국인

세액공제 내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

  -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 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여기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
㉯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상승이 일부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원, 고액연봉자, 친족관계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함

공제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2018.2.13. 시행령 개정 시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하였고, 개정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의4

1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세액공제 내용

- 2017.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2018.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은 7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

공제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받은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상당액의 계산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일수 ×0.03%
- 2017.12.19. 법률 개정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개정 규정은 2018.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30의2

17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세액감면 내용

-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2018.12.31.(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합니다.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

- "사업전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전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전환 후 5년 이내에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 "사업전환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구분	사업전환일
전환전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	전환사업의 개시일
전환전 사업의 규모 축소	사업전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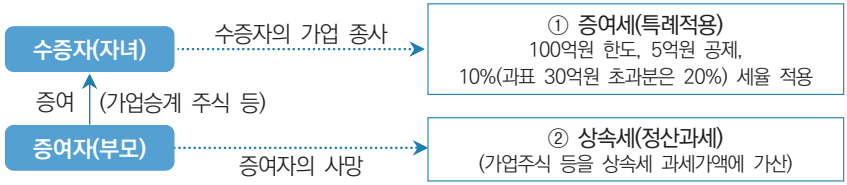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학원업·관광숙박업 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제외),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감면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전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환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대상 과세연도를 기산합니다.
-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릅니다.
- 전환전 사업의 업종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전환 후 사업은 제조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기간 이내에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사업전환전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거나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사업전환전 매출액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33의2

18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다)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

-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 증여자 요건

-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 법인 30%) 이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승계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결정한 증여세액×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3/10,000

※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비교('18년 귀속)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5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
50%(누진공제 4.6억)	세 율	10%(30억원 초과분은 20%)
30.15억원	산 출 세 액	10억원
(1.51억원)	신고세액 공제	(-)
28.64억원	자진납부 세액	10억원

Part 4

합병 등 구조조정

1.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 이익 과세특례



1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통합)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간에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간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시가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 부채의 합계액

- (법인전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전환한 법인

  -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 발기인, 최저 자본금, 사업 양도일 요건 등 구체적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참고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세제지원 내용

- (세액감면 승계) 다음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통합 또는 법인 전환하는 경우 통합법인 또는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이월공제세액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세액(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 또는 법인 전환하는 경우 통합법인 또는 전환법인은 그 미공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31·§32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요건

- 법인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출자 :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사업 양도·양수 :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아래 자본금 요건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추징)

-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인수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 이익 과세특례

과세특례대상

- 내국법인

과세특례 내용

- 2018.12.31.까지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함)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내국법인이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특례신청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그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44

국세청
www.nts.go.kr

Ⅳ

혁신성장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1 세무조사 선정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 되나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②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1) (순환조사)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 5년마다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실도) 순환조사 외 법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평가한 신고성실도에 따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장기미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1) (성실도) 과세자료,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장기미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무작위 추출)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 되나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③에 따라 정기 조사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할 경우

2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기업주 개인의 사적경비와 법인의 비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기업주 사적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기업주 사적경비를 비용 처리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한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 국제거래 60%)됩니다.
-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위의 비용은 기업주가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사가 부담한 가사비용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처리하는 경우 추가 부담할 세금

배당 처리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의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주금의 가공납입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무엇인가요?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금을 가공납입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 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4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를 반드시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 관련 거래 시 지출증빙은 꼭 수취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증명서류를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결국은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빙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신고내용 확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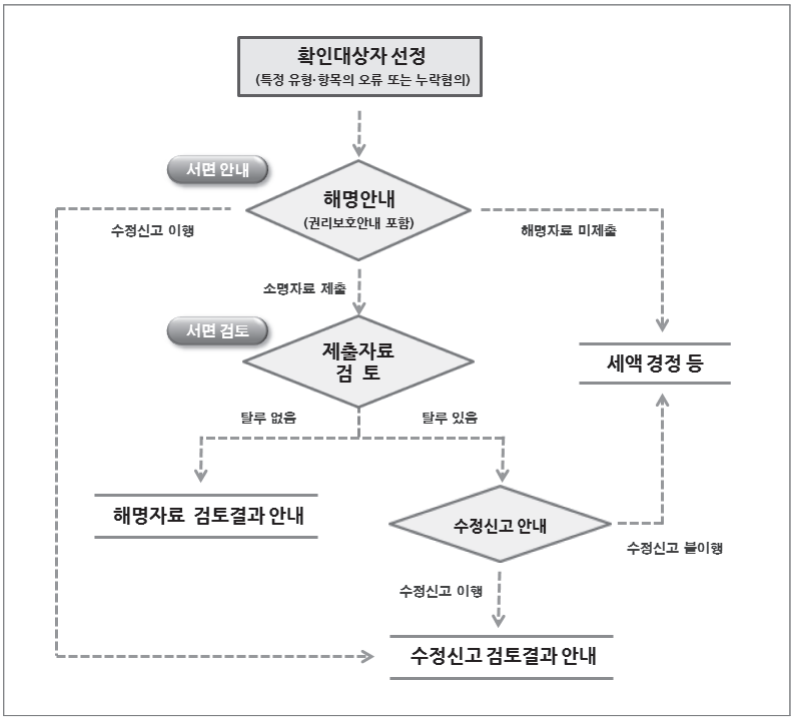
신고내용 확인이 무엇인가요?

- 납세자의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의 반영여부 또는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자료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내용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부분에 한정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납세자 해명, 수정신고 안내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하시고, 신고내용이 적정한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명자료 검토결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안내하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 경정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흐름도


확인대상자 선정
(특정 유형·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혐의)
서면 안내
해명안내
(권리보호안내 포함)
수정신고 이행
해명자료 미제출
소명자료 제출
서면 검토
제출자료
검 토
세액 경정 등
탈루 없음
탈루 있음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수정신고 안내
수정신고 불이행
수정신고 이행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6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용된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 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공무원이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 예규, 판례 등 국세 관련 각종 세무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다양한 세무정보를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관련사이트] → [국세법령정보] 또는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앱(App)을 무료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개요)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외직접투자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명세서	위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신고기간) 소득세(매년 5월)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신고기간에 자료를 미(거짓)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미(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 종류	과태료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소 득세법 시행령 별표5) (법인) 건별 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 연 5천만원 한도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 손실거래명세서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해외부동산·주식과 세금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 각 단계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납부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1…1에 따라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현지국가에서 세금을 낸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해외부동산투자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부동산(이에 관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거주자(내국법인 포함)는 소득세(매년 5월) 및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자료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 개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해외주식[1]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지분율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올해 해외계좌 잔액 5억원 초과 시 내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고 대상
신고 계좌 유형	해외금융회사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 대상 자산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 집합투자증권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위 신고 대상 자산의 산정금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20%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이하의 벌금)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20억원 초과금액×15%
50억원 초과	6.5억원+50억원 초과금액×20%

10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개인의 경우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하였으며,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나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3항에 따른 법인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신고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11 주식양도와 세금

양도소득세(법인 제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요?

-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주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더라도 '18.1.1.부터는 거주자인 대주주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실제 양도 시 정산).

| 과세대상 주식 등 분류 및 적용세율 |

구분		내용	세율
상장주식		•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	• 단일세율 - 10, 20, 30% • 누진세율 - 20~25%
비상장주식		• 비상장법인의 주식	
파생상품		• (국내) 코스피200선물, 옵션, 주식워런트증권('17.4.1.이후)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등	• 단일세율 - 5%('18.3.이전), 10%('18.4.이후)
기타자산	특정주식*	•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이상이고 • 지분 50%이상 보유한 과점주주가 • 과점주주 외 자에게 당해 법인 지분 50%이상 양도	• 누진세율 - 6~42%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50%이상(16~52%)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 영위하는 법인주식(1주라도 양도시 과세)	
	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	• 배타적 이용이나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1주라도 양도시 과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주식 종류별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105③).

종류별	신고기한	사례(양도일 : '18.2.10.)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납부기한 : '18.8.31.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납부기한 : '18.4.30.
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신고·납부기한 : '19.5.31.
국외전출시 주식('18.1.1.이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납부기한 : '18.5.3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익유무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주식시장 등 거래분은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세율 등 |

<table>
<tr><th rowspan="2">거래시장</th><th colspan="2">세율</th><th rowspan="2">거래되는 주권</th><th rowspan="2">신고납부</th></tr>
<tr><th>증권거래세</th><th>농어촌특별세</th></tr>
<tr><td>유가증권시장</td><td>1,000분의 1.5
(0.15%)</td><td>10,000분의 15
(0.15%)</td><td>상장주식</td><td rowspan="3">한국예탁결제원</td></tr>
<tr><td>코스닥(코넥스)시장</td><td rowspan="2">1,000분의 3(0.3%)</td><td rowspan="2">-</td><td>상장주식</td></tr>
<tr><td>K-OTC시장</td><td>K-OTC 등록주식</td></tr>
<tr><td>장외거래</td><td>1,000분의 5(0.5%)</td><td>-</td><td>상장 및 비상장주식</td><td>양도자</td></tr>
</table>

1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와 발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는 누구이고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의무 대상자	가입 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까지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및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등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 시 불이익이 있나요?

- (가산세) 가입의무 대상자가 미가맹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란?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최초 거부 시 가산세(거부금액의 5%)를 부과하고, 재차 거부 시부터는 가산세 및 과태료(거부금액의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 특히,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미발급금액의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발급의무자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발급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시행일 및 대상

발급의무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1.1.1	모든 법인사업자
2014.7.1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7.1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과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혜택)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1%)
미전송	공급가액의 1% (지연전송한 경우 0.5%)

전자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발급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시행일 및 대상

발급의무시행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1.1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과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혜택)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18.12.31.발급분 까지, 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1%)
미전송	공급가액의 0.3% 또는 1%(지연전송한 경우 0.1% 또는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홈택스 이용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납부부터 증명발급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회원 가입
  ② 세무서 방문 가입 :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 법인세 2만원).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MyNTS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각종 세무정보(세금 신고·납부, 우편 발송된 고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MyNTS(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홈택스 앱]

국세증명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발급 신청	• 증명 열람 • 팩스 전송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12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 사실 여부 검토 필요(신청 후 3근무시간 내 처리)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신청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항목에 대한 서비스 *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등 제외), 사업장 소재지(자가 → 자가만), 연락처 등	
휴·폐업 신고	• 즉시 휴·폐업 신고 가능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재개업 신고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방문민원 결과 조회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의 세무서 방문 접수분에 대한 진행 상황 조회(7일간)	
민원신청 결과 조회	•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가 모두 조회(7일간)	
민원증명 원본 확인	• 모바일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홈택스 앱) 사업자등록증 : 모바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고 '팩스 발송'(모바일 민원실 우측)

15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사업용계좌 제도는 무엇인가요?

-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및 사용대상 거래는 무엇인가요?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계좌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1개의 계좌를 2이상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대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의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 미신고가산세 :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①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② 사용대상금액 중 미사용 금액의 0.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160의5

국세청
www.nts.go.kr

부 록

혁신성장 관련 지원정책 현황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책자 조회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간행물

창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 대표자('18.1.1기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창업 준비공간, 교육, 기술 및 장비지원 등)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 031-490-1278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에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추가하여 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모델(BM)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정부사업연계, 성과창출 프로그램등 지원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042-480-4342~49, 4367~69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창업교육과 창업준비 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87, 4393
세대융합형 창업사업화 지원	중장년과 청년간 팀을 구성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사업화자금, 매칭프로그램, 교육 및 멘토링, 인프라 제공 등 지원	창업진흥원 : 042-480-4384, 4386, 4388
스마트창작터	앱,콘텐츠,소프트웨어등 ICT기반유망지식서비스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창업자('15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실습교육, 시장검증, 사업화를 단계별 지원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 042-480-4391, 4~5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스마트벤처캠퍼스	SW, 콘텐츠,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창업사업화를 위한 자금, 교육·멘토링, 마케팅, 사무공간 등을 지원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 042-480-4396~7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3, 4495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예비창업자, 창업자, 사업화 및 창업에 관심있는 국민	아이디어에 대해 7일간 진단 및 조언, 멘토링 서비스 제공	KISTI온라인창업 지원센터 : 02-3299-6297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창업자·기업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진출등 지원	창업진흥원 창업생태계조성 TF팀 : 042-480-4410~4412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등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 02-369-0925
여성창업경진대회	사업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	시상 및 포상수상자는 여성창업 보육실 입주 우대,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IP) 획득, 홍보물제작, CI 개발 지원 등 맞춤 지원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 02-369-0993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 기업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 환경 등 제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육성실 : 02-2181-6535
장애인 창업 육성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기초 창업소양 중심의 창업기초교육, 특정 업종 창업능력 제고를 위한 업종 특화교육 지원 등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02-2181-6521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전반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교육·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비용등 지원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042-480-4346
창업선도대학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시제품개발, 지재권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대1억원, 1,050개사 내외)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 042-480-4353~9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 이내의자(팀)	통합본선 진출자(팀) 등에게 상금 및 맞춤형 멘토링, 특허출원비 등 지원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 042-480-4398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기업 내부에서 운영(예정) 중인 사내벤처팀	사내벤처팀당 최대 1년간 2억원 이내 사업화자금 및 서비스 등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창업지원부:02-368-8741~5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창업아이템의 우수성에 따라 차등적 보조금 지급 및 주관기업이 마케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와 자율적으로 매칭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1, 4496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최대 6년 지원(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성장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기술보증기금	신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담보어음, 입찰 시 보증금, 무역금융 등에 대한 각종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www.kodit.co.kr) 문의처 : 1544-1120
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21종	공공기관은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서울 02-2110-6322 외 11)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각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7, 0319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수행 지원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36, 0742, 0740(연구장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 성장을 위한 R&D기획 지원,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2, 3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기술전문기업 간 협력 R&D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42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 0503, 042-388-0739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 기업으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매출발생)가 없는 기업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 지원 추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3, 9852, 9859
기술사관 육성사업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 지원처 : 055-751-987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6종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 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해당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청 (서울 02-2110-6329 외 11)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 1~5억원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4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국내·외수요처(정부,공공기관, 대·중견기업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공정·품질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기업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및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61~7
뿌리기업 지원사업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상 뿌리기업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 등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우대(1인 0.1%) 등	중소벤처기업부인재활용촉진과 (042-481-4493) 전국중소기업계약학과주관대학 http://sanhakin.mss.go.kr→정보마당→참여학과현황→계약학과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선금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	공공구매론 운영(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239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과제 및 업력에 따라 전체 컨설팅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5백만원~30백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5, 9844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각종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자	상담은 무료, 현장클리닉은 1일당 35만원 지원(기업부담금 20%)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울 : 02-2110-6351~3 외 17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 피해 복구비용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신규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실무교육 제공 등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여성경제인 DESK 운영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분야별 전문가)이 여성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상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센터: 02-369-0934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하고 기업당 45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유망자금,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지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차감하고 기업당 45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기업당 45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신용보증기금	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지원(한도 30억원)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문의처 :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지원(한도 8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www.koreg.or.kr) 문의처 : 1588-7365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R&D 실무 역량향상과 지역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지원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02-6009-3266, 3278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장애인기업	조달시장의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장애인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 입점을 통해 마케팅 활동 지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시·도단위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의 기술자원, 사업화 자원, 마케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분야 수혜기업에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기업지원) : 02-6009-3764, 3735, 3772
지역기업혁신 역량강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초기 기업	지역의 기술혁신 기업을 발굴, 신기술 실증 사업화(시제품 고도화·인증등) 지원	창업진흥원 창업생태계조성 TF팀 : 042-480-4414
지역특화산업육성 (R&D)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역별 해당 주력산업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과제당 최대 3억원, 360개사 내외)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주력) : 02-6009-3764, 3735, 3772, 3725
오프라인 기획전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등	대형유통망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상품기획하고 이를 해당 유통망內 편집매장 방식으로 판매홍보 지원 (전문기관이 혁신제품 DB를 활용)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586, 9592
공영홈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소기업 제품	창업·R&D등 창의혁신 제품, 벤처·이노비즈신 제품, 6차산업화 제품등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사업화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공영홈쇼핑 입점안내 : 02-6350-8888 ~9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5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외국인 예비창업자 등	사업아이템(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프로그램 및 본격적인 현지진출·창업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제공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02-3440-7302 ~7314
전자상거래수출시 장진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배송, CS, AS등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 입점·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유통전문기업을 통해 대행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지원 담당관 : 042-481-4355
수출성공패키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며,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 지원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처 : 02-3460-3426 ~8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아시아하이웨이	중국 또는 아세안지역에 기수출 중이거나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70%~50% 차등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13
단체 해외전시회 바우처	국내 중소기업	업체당 11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의 50%를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 02-2124-3291~4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사업	국내 제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비용 중 업체당 20백만원 한도 내지원(총사업비의 70%)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지원 담당관 : 042-481-8928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RTL 등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이내 지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2~8

성숙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제품화·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	기술개발사업화자금과 글로벌 진출 지원자금을 기업당 20억원 내에서 융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중간2(MES) 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보급1팀 : 02-6050-2777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 양성)	기업(기업부설연구소)-대학원(학과) 간 컨소시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당기업 등에 취업까지 연계, 컨소시엄당 연간 3.5억원내외 최대 5년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25% 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02-6009-3236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기업, 혁신형기업	수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이나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유망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매출채권 및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문의처 : 1588-6565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우수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참여대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맞춤 교육, 현장실습, 팀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인력을 채용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7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중 창업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27,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공공연구기관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최대 3년, 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02-6009-3261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	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 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 053-210-9543 (www.kiria.org)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매출관리등의 업무지원, 업종별 협회·단체 소속회원사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2~4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도입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스마트공장 통합솔루션 개발·구축등 관련 총사업비의 60%, 최대 1.8억원 지원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8~9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일정 요건의 기업규모와 기업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해외마케팅, 시장진출전략 등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한국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3511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으로서, 최근 4개년간('14~'17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중소기업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70%~50% 차등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724
재도약 지원자금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수준의 대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2, 9633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개발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최대 1.5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4

국세청
www.nts.go.kr

이 책자 내용 중 세법과 관련한 사항은
2018년 9월 현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예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

발 행 일 자	2018년 9월
발 행 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감 수	법인세과장 김 성 환
집필 · 편집	서 기 관 이 광 섭
	세무조사관 김 영 주
	세무조사관 김 지 윤
	세무조사관 강 수 민